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가이드북



image: storyset.com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머리말

안전은 모든 기업이 가장 우선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은 모든 기업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중요한 경영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기업이 갖추거나 실행해야 할 <조직과 시스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3대사고 예방 수칙>, <사고발생 후 절차> 등 실무에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북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 목 차 -

1. 조직과 시스템	1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직 / 4
	2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 5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9
2. 안전보건교육	1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직 / 11
	2	중처법상 안전보건교육 / 14
	3	교육 진행과정 / 15
		1) 교육 주제 선정 / 15 2) 교육 장소 선정 / 16 3) 교육 강사 선정 / 17 4) 교육 진행 및 평가 / 18
3. 위험성평가	1	산안법상 위험성평가 / 21
	2	중처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22
	3	위험성평가 방법 / 23
		1) 평가 시기 / 23 2) 평가 대상 / 24 3) 평가 절차 / 25
4. 3대사고 예방수칙	1	떨어짐 / 27
		1)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현황 / 27 2) 핵심 안전수칙 / 28
	2	끼임 / 29
		1)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현황 / 29 2) 핵심 안전수칙 / 30
	3	부딪힘 / 31
		1)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현황 / 31 2) 핵심 안전수칙 / 32
5. 사고발생 후 절차	1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 6
	2	수사 진행 절차 / 6

1. 조직과 시스템

1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직 / 4

2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 5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9



1. 조직과 시스템

1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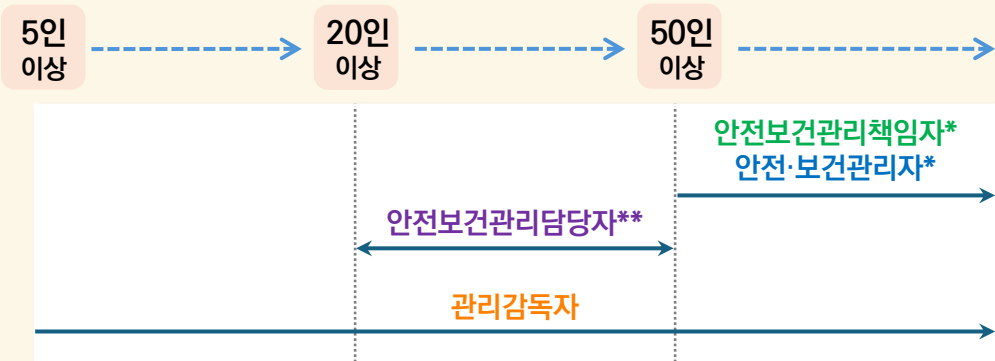
Check Point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가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책임자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대상>



* 선임업종은 및 사업규모는 산안법 시행령 [별표 2, 3, 5] 참고

** 선임업종은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상주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자	전문 자격을 갖춘 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전문 자격을 갖춘 자, 담당자 양성교육* 이수자 * 안전공단 전국 광역본부에서 무료 수강 가능
관리감독자	생산부서에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 (주로 직장, 조장, 반장 등)

- 사업주는 선임·지정 사실, 직무교육 이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존(3년)해야 합니다.

1. 조직과 시스템

2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Check Point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이행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 사업장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조치 의무

시행령
제4조

4.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복잡한 문서보다는 한 장으로 정리하여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경영방침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목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보세요.

4.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단, 20~49인 5개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필요)

4.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업무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의 핵심 수단임과 동시에,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서류인 만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Chapter 3 참고).

4.4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 사업장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간 안전보건에 할당할 수 있는 총괄 예산을 정하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소액이라도 별도로 안전보건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 현장 안전조치의 주체인 관리감독자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합니다.

1. 조직과 시스템

4.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검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문인력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단, 20~49인 5개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필요)

4.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청취** 및 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 ▶ 안전건의함, 아차사고 발굴, TBM 등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 의견청취 결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4.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 포함)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 매뉴얼은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단순·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효과적인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대응훈련(시뮬레이션) 실시를 권장합니다.

4.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도급 예시) 유지·보수업체,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시행령 제5조

5.1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 50인 미만 사업장은 모든 법령을 확인하는 실정이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의무 이행을 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5.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점검 후 반드시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3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 50인 미만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Chapter 2 참고).

5.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 점검 결과, 실시되지 않는 교육이 확인된 경우 예산 추가 편성 등 교육 실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존(5년)**해야 합니다(소상공인 제외)

1. 조직과 시스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위반 조항(*24.12월말 기준)

3호(위험성평가),
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위반이 가장 문제되고 있습니다!

구분 (시행령 제4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			0	0		0	0							0	
2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6															
7			0			0	0					0			
8	0		0	0			0						0		0
9		0			0					0		0		0	

구분 (시행령 제4조)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	31호	계
1	0			0									0				8
2								0									2
3	0	0	0			0	0	0	0	0		0	0		0		24
4	0								0						0		6
5		0	0	0	0	0				0	무죄	0		0	0	무죄	22
6		0															1
7		0		0	0		0		0					0			10
8		0		0													8
9			0		0							0	0				9

- 판결 사례 중 시행령 제4조제3호(24건), 제5호(22건)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망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이 모호해 법적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8건), 전담조직 설치(2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6건), 도급 시 산재예방능력 평가 기준 마련(8건) 등의 위반사항도 유죄판단의 근거로 인용됨
- 무죄선고 사례 2건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어 무죄가 선고됨

1. 조직과 시스템

✓ <참고> 법원의 중처법 유·무죄 판결 사례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피고인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1호}과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3호}를 전달받지 못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 A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7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 A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5호} 또한 마련하지 아니하여 관리소장 A이 종사자 G에게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은 채 사다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추락에 의한 중대재해의 발생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 해당 사례는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중략)…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인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4호}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통제에 필요한 안전시설비 등을 집행하도록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중략)… 협착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8호}하지 아니하여 …(후략)

⇒ 해당 사례는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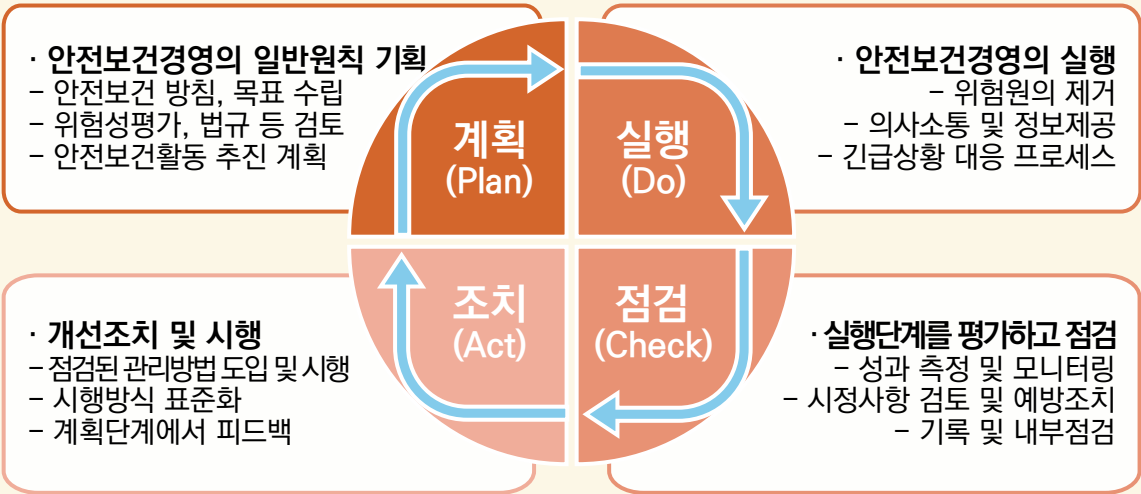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전담조직을 두었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으나, 이미 내부적으로 전담조직에 배치할 인원을 결정하고 중대재해 **대응매뉴얼도 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OO공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며 거의 매일 4공장을 포함하여 공장 순회점검을 하였고, 2022. 1. 중대재해 전담조직의 팀원으로 내정된 뒤에도 OO공장 안전관리자가 총원되지 않아 OO공장 안전관리자 지위를 유지하며 순회점검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중략)…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 해당 사례는 무죄(인과관계 없음) 선고

1. 조직과 시스템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PDCA Cycle에 기반하여 재해예방과 기업 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말합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안전보건	경제적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 강화 ·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직업병 예방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 · 법규 및 기준 준수로 리스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손실 비용 절감 · 생산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증가 · 산재보험료 절감 및 기업 신뢰도 상승 · 법적 책임 및 벌금 부담 감소 · 기업 이미지 향상을 통한 고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조직 만족도 증가 ·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불신 해소 ·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 ·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 ·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는 대표적으로 KOSHA-MS(국내), ISO 45001(국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 여건이 어려워 인증이 어렵다면 PDCA Cycle에 맞춰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안전보건교육

1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 / 11

2 중처법상 안전보건교육 / 14

3 교육 진행과정 / 15

- 1) 교육 주제 선정 / 15
- 2) 교육 장소 선정 / 16
- 3) 교육 강사 선정 / 17
- 4) 교육 진행 및 평가 / 18



image: storyset.com

2. 안전보건교육

1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



Check Point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실시
채용 시 교육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직무 배치 전 실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 을 하기 전 실시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 작업 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39개)*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구성은 근로자와 동일하나, **교육 시간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하세요.
- 사업주는 각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교육대상별로 **서명**을 받은 **교육일지**를 작성·보존(**5년**)해야 합니다.
- **교육일지**는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 작성 후 서류나 전산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고, 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강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직무·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교육

✓ <참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시행규칙 [별표 4])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사무직 종사자 판매업무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일용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일용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일용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이상	일용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제외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 <참고> 관리자 직무교육 시간(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신규	선임 후 3개월	6시간 이상	신규	선임 후 3개월	34시간 이상
보수	신규 이수 2년 기준 전·후 6개월	6시간 이상 (1회/2년)	보수	신규 이수 2년 기준 전·후 6개월	6시간 이상 (1회/2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선임 전	16시간 이상
보수	신규 이수 2년 기준 전·후 6개월	8시간 이상 (1회/2년)

2. 안전보건교육



〈참고〉 TBM(Tool Box Meeting)으로 정기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TBM(Tool Box Meeting)
작업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 관리감독자(반장, 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내용과 안전작업 절차에 대해 확인·의논하는 활동



고용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TBM의 안전보건교육 인정을 위한 증빙 부담 완화

■ TBM이 현행 규정 및 TBM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형태로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 고용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TBM’ 검색

〈참고〉 TBM 교육 증빙 예시

□ TBM을 근로자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별로 기록할 수도 있으나 TBM별로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기재사항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 교육자료, 현장 사진 등의 추가 자료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관리

○ (예시 1) TBM 단위(부서, 공정 등) 기록 양식

일자	장소	시간	강사	참석 인원 / 총원
1	○○ 작업장	08:50 ~ 09:00	김○○	00명 / 00명
2	○○ 작업장	08:50 ~ 09:00	이○○	00명 / 00명
3	△△ 작업장	08:50 ~ 09:00	박○○	00명 / 00명
(중략)				
30	작업장	08:50 ~ 09:00	이○○	00명 / 00명
31	작업장	08:50 ~ 09:00	박○○	00명 / 00명

※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대표 등 확인

○ (예시 2)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양식(우측 하단 TBM 활동 기록)

참조 :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1. 주요업무(부서/공정) 연단일	발기인 3명 일부	발기인 3명 일부		
발기인명(성, 명)	책임자	연차기간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위험성 평가, 감시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김○○○	김○○○	30.12.28	(위험성평가) → 이행확인 → 교육 TBM 진행	위험성 평가, 감시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확인
이○○○	이○○○	31.01.04		
박○○○	박○○○	31.01.11		
(중략)				
30	○○○	30.12.28		
31	○○○	31.01.04		

출처: 고용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2. 안전보건교육

2 중처법상 안전보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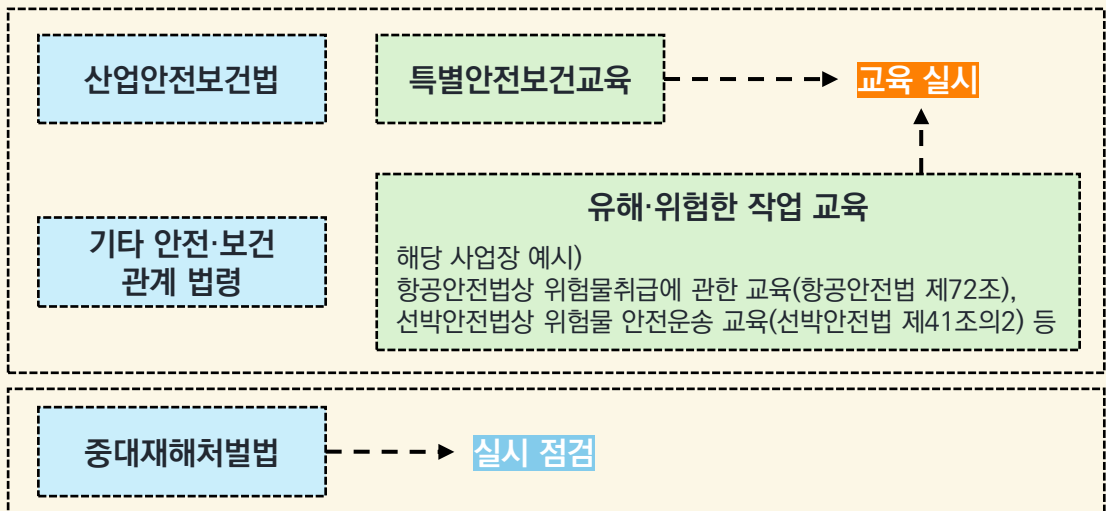


Check Point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교육(특별안전교육)을 이행했는지 점검(반기 1회 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교육실시 점검이 필요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고용부 해설서 참조)
 - ※ 산안법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을 중심으로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특별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사망하고, 중처법상 이행점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교육 미실시 벌칙 : 3천만원 이하 과태료(위반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50만원→100만원→150만원)
 - ※ 근로자 사망 시 벌칙 : (개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2. 안전보건교육

3 교육 진행과정

1 교육 주제 선정

- 사업장의 위험성분만 아니라 산업재해 경험,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주제 선정
- 또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견과 수준을 파악하여 교육 내용 선정

✓ 교육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활용해보요!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 → 검색

전체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일자검색 ●전체 ○1주 ○1달 ○1년 [] ~ []

조건연기/집기 🔍 조건 검색

제작형태 (Publication Types)	업종 (Industries)	재해유형 (Injury Types)	외국인 근로자 (Migrant Worker)
<input type="checkbox"/> 전체선택 <input type="checkbox"/> 책자 <input type="checkbox"/> OPS <input type="checkbox"/> 리플릿 <input type="checkbox"/> 교안(PPT) <input type="checkbox"/> 동영상	<input type="checkbox"/> 전체선택 <input type="checkbox"/> 공통업종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건설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전체선택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끼임 <input type="checkbox"/> 부딪힘 <input type="checkbox"/> 깔림 · 뒤집힘 <input type="checkbox"/> 물체에 맞음	<input type="checkbox"/> 전체선택 <input type="checkbox"/> Korean(한국) <input type="checkbox"/> Chinese(중국) <input type="checkbox"/> Vietnamese(베트남) <input type="checkbox"/> Thai(태국) <input type="checkbox"/> Uzbek(우즈베키스탄)

🔍 검색초기화 🔍 조건검색추가 +

HOT 인기 콘텐츠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유지 OPS

[2023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산업현장 위...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고예방 매뉴얼

출처: 안전공단, 안전보건자료실 웹사이트

2. 안전보건교육

2

교육 장소 선정



- 교육 장소는 근로자 수용이 충분한 공간,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한 공간에서 진행
-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사무실, 현장 등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

✓ 우리 회사에선 어떤 곳이 교육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2. 안전보건교육

3

교육 강사 선정

강사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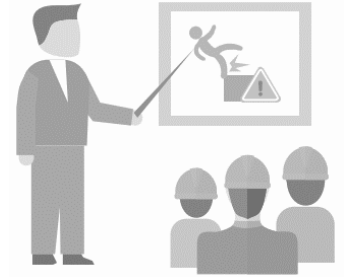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관리감독자
- ③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자 위탁 수행자 포함)
- ④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자 위탁 수행자 포함)
-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⑥ 산업보건의
- ⑦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③ 중처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⑥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 ⑦ 의사, 간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2. 안전보건교육

4 교육 진행 및 평가



- 교육을 진행할 때, 주제·목표·내용에 대한 설명 후 **위험성 우선순위로 실시**
- 사업장 내 부서 또는 팀, 작업별 등 주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집중력 있는 교육 진행

✔ 교육 목표의 효과적인 전달로 교육 목적을 달성해봐요!

1차 전달



교육자



근로자

2차 전달



교육 수강 근로자

“상호 소통”



교육 수강 근로자

3차 전달

“사내 게시판, SNS 등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 공유 분위기 조성”

2. 안전보건교육

- 교육 평가는 교육 진행 중 **실시간 문답** 또는 교육 종료 후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
- 교육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청취한 후 다음 교육에 반영하여 개선



 교육 참여자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 평가를 해봐요!(예시)

번호	평가 내용	평가 점수				
		1	2	3	4	5
1	나는 교육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2	나는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알게 되었다.					
3	나는 교육을 통하여 작업 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되었다.					
4	나는 교육에 만족한다.					
5	추후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6	동료에게 교육 참여를 적극 권유하겠다.					
7	사업장에 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					

출처: 안전공단,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3. 위험성평가

- 1 산안법상 위험성평가 / 21
- 2 중처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22
- 3 위험성평가 방법 / 23
 - 1) 평가 시기 / 23
 - 2) 평가 대상 / 24
 - 3) 평가 절차 / 25



3. 위험성평가

1 산안법상 위험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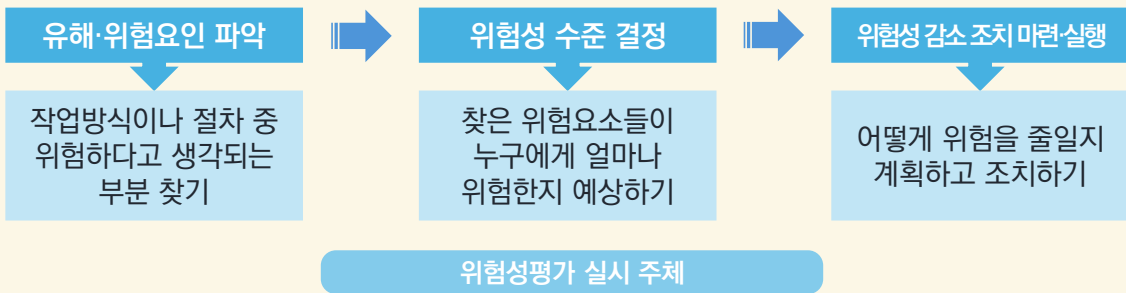
Check Point !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의 핵심 수단임과 동시에,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서류인 만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근로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실시 후에는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3년)해야 합니다.

〈필수 기록 사항〉



-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④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⑤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위험성평가 미실시로 인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실시 주체(근로자 제외)의 직무 미수행으로 인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2 중처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Check Point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소규모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단순하므로 정밀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보와 가이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 ▶ 대책은 유해·위험요인의 통제·제거가 쉽다는 이유로 위험도가 낮은 요인부터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확인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 ▶ 근로자 참여 없이 실시하거나 전년도 위험성평가에 평가 일자만 바꾸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 ▶ 자체적으로 실시할 여력이 안 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리감독자와 해당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특별히 살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가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 작업자가 변경될 때,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가 변경될 때 꼭 살펴봅니다.
- 조직의 작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을 알리고** 교육을 제공합니다.
 - ▶ 소속 근로자 외에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고객, 인근 주민, 조직의 공급망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처: 고용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3.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방법

1 평가 시기

■ 위험성평가는 이럴 때 실시해야 합니다.

- ① 사업장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최초평가**
- ② 설비나 물질이 새롭게 도입됐을 때 ⇒ **수시평가**
- ③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 **수시평가**
- ④ 매년(최초평가 실시 날부터 1년 이내) ⇒ **정기평가**(최초·수시평가 결과의 적절성 재검토)

〈 최초·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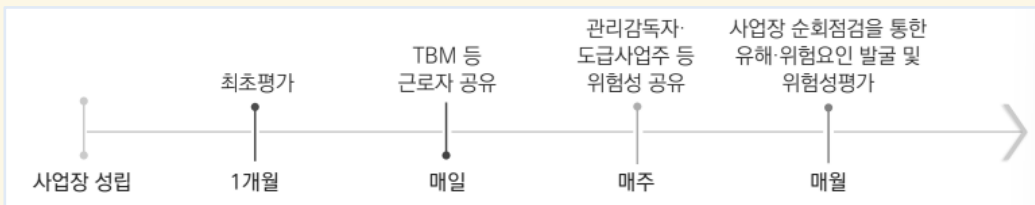


또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 선택)

- ① 사업장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최초평가**
- ②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 **상시평가**

월(月)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	위험성 평가
주(週)	안전보건담당자, 관리감독자 중심 평가결과·조치계획·공유	⇒	이행상황 점검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5~10분 실시)	⇒	근로자 공유

〈 최초-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흐름도 〉



출처: 경총, 한눈에 보는 중처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

3. 위험성평가

2 평가 대상

- 위험성평가 대상은 현장 작업자가 일하는 **작업 전체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 ▶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비일상·임시·수시로 하는 작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 ▶ 유해·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 ▶ 아차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얼마든지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의사에 의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고〉 평가 대상 예시

① 위험·유해요인에 의한 분류

위험요인	유해요인
- 기계·기구, 설비 등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부식성 물질 등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 등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등 - 작업행동 등

② 위험원에 의한 분류

⇒ 기계적, 위험물질, 전기에너지, 생물학적 작업물질,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등

③ 재해유형별 분류

⇒ 떨어짐, 넘어짐, 깔림, 부딪힘, 맞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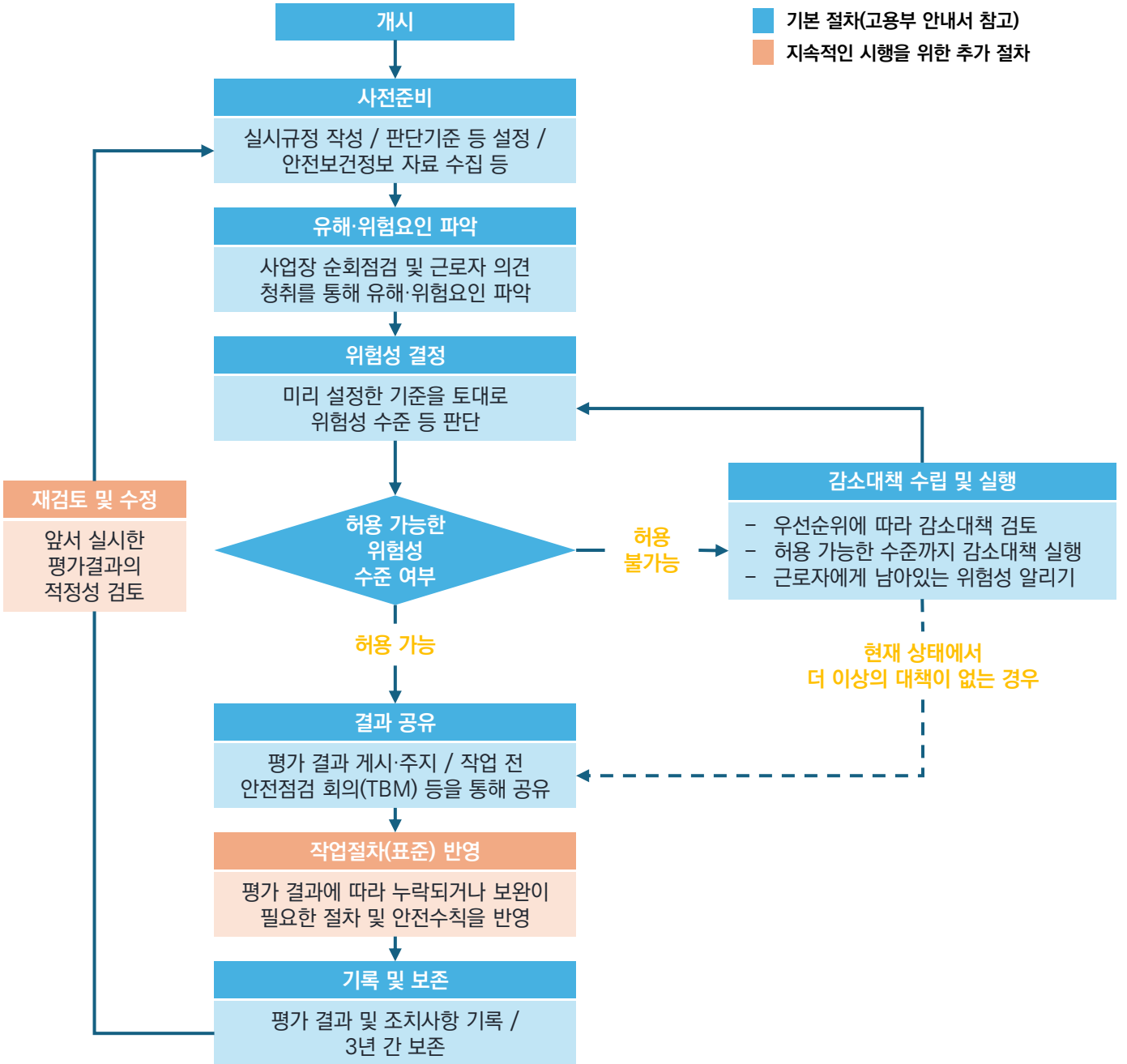
④ 위험기계·기구·설비(제조현장)

⇒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고소작업대, 리프트, 산업용 로봇, 프레스 등

출처: 경총, 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

3. 위험성평가

3 평가 절차



출처: 경총, 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

4. 3대사고 예방 수칙

1 떨어짐 / 27

- 1)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현황 / 27
- 2) 핵심 안전수칙 / 28

2 끼임 / 29

- 1)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현황 / 29
- 2) 핵심 안전수칙 / 30

3 부딪힘 / 31

- 1)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현황 / 31
- 2) 핵심 안전수칙 / 32



4. 3대사고 예방 수칙

1 떨어짐

1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떨어짐 재해는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함
- 고용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전체 업무상사고 사망자 812명 중 떨어짐 재해 사망자는 286명(35.2%)으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유형임
 - ▣ 업종별로 건설업 198명(69.2%), 제조업 34명(11.9%), 기타(건설·제조 외) 54명(18.9%) 순
- 떨어짐 재해는 주로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 등 건축 구조물에서 발생함
- 떨어짐 위험장소에 방지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



2023년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떨어짐 재해 사망자

35.2%

• 812명 중 286명



업종별로는
건설업

69.2%

• 제조업(11.9%), 기타(18.9%)

출처: 고용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안전공단, 「월간 안전보건 2024년 5월호」

4. 3대사고 예방 수칙

2

핵심 안전수칙



Check Point !

떨어짐 재해는 **건축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호설비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

근원적인 떨어짐 재해 예방

- ▶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방법을 고려하고, 방호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떨어짐 재해 방지 대책 반영
- ▶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떨어짐 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환경 조성

2

방지 또는 방호설비 등에 의한 떨어짐 재해 예방

- ▶ 악천후 시 작업금지, 떨어짐 재해 위험이 없는 상태로 작업방법 변경, 작업장소 개선 등 떨어짐 재해 방지 조치
- ▶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방벽의 설치, 사다리 등받이 울 등 떨어짐 방지 설비 설치

3

개인방호 설비에 의한 떨어짐 재해 예방

- ▶ 떨어짐 방지 설비 설치로 떨어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거나, 작업상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떨어짐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대 등 개인용 떨어짐 방호설비 사용

※ 개인용 떨어짐 방호설비는 사고의 결과로 오는 상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

출처: 안전공단, 안전보건 VR 교안 「추락재해 예방」

4. 3대사고 예방 수칙

2 끼임

1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끼임 재해는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함
- 고용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전체 업무상사고 사망자 812명 중 끼임 재해 사망자는 88명(10.8%)으로, 떨어짐 다음으로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함(사업장외 교통사고 제외)
 - ▣ 업종별로 제조업 39명(44.3%), 건설업 19명(21.6%), 기타(건설·제조 외) 30명(34.1%) 순
- 끼임 재해는 주로 컨베이어벨트, 천정크레인, 지게차, 산업용 로봇, 배합·혼합기, 승강기, 리프트, 프레스에서 발생함
- 끼임 재해가 나타나는 위험의 종류는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물림점이 있음



2023년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끼임 재해 사망자

10.8%

• 812명 중 88명



업종별로는
제조업

44.3%

• 건설업(21.6%), 기타(34.1%)

출처: 고용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안전공단, 안전보건 VR 교안 「끼임재해 예방」

4. 3대사고 예방 수칙

2

핵심 안전수칙



Check Point !

끼임 재해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호장치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

사업주의 예방대책

- ▶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 기어, 롤러의 말림점에는 방호덮개 설치
- ▶ 벨트, 체인 등 동력 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 ▶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금지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 ▶ 작업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작동상태 점검
- ▶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2

근로자 준수사항

- ▶ 점검부위 외의 방호덮개 개방 금지
- ▶ 덮개 연동(Interlock)장치 기능 해제 금지
- ▶ 방호장치의 결함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보고
- ▶ 점검 작업 시에는 기동장치를 잠금 조치한 열쇠를 직접 소지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근로자의 전원 투입 방지(LOTO: Lock-Out, Tag-Out)
- ▶ 안전작업절차 준수

3

기계의 정비·보수·청소 작업 시에는

-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
- ▶ 전원 차단 후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가동하지 않도록 전원기동장치에 잠금조치를 하고, 작동금지 표지판 설치
- ▶ 작업 중 타 작업자의 기계전원 불시가동 우려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

4. 3대사고 예방 수칙

3 부딪힘

1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부딪힘 재해는 재해자 또는 기인물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해 접촉 또는 부딪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고용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전체 업무상사고 사망자 812명 중 부딪힘 재해 사망자는 69명(8.5%)이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7명(68.1%) 발생함
 - ▶ 업종별로 건설업 35명(50.7%), 제조업 12명(17.4%), 기타(건설·제조 외) 22명(31.9%) 순
- 부딪힘 재해는 주로 설비·기계, 건축물·구조물, 재료·부품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함
 - ▶ (설비·기계) 지게차, 크레인, 굴착기, 이동대차, 화물차량 등
 - ▶ (건축물·구조물) H-Beam, 출입문 등
 - ▶ (재료·부품) 코일철판, 파이프 등



2023년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부딪힘 재해 사망자

8.5%

• 812명 중 69명



업종별로는
건설업

50.7%

• 제조업(17.4%), 기타(31.9%)

출처: 고용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안전공단, 안전보건 VR 교안 「충돌재해 예방」

4. 3대사고 예방 수칙

2

핵심 안전수칙



Check Point !

부딪힘 재해는 **설비·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로 확보, 신호수 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

일반작업 안전수칙

- ▶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정돈
- ▶ 통제구역, 제한구역은 허가없이 출입금지
- ▶ 타인의 기계·기구, 차량 등에는 절대 손 대지 않기
- ▶ 통로를 보행할 때에는 움직이는 기계나 차량 주시
- ▶ 출·퇴근 시 교통사고에 항상 주의
- ▶ 회사에서는 지정된 장소와 구역을 이용하여 통행
- ▶ 통행수칙을 정하여 준수(ex. 보행자는 좌측, 차량 등은 우측 통행)

2

작업신호

- ▶ 기계·차량 후진 시에는 보행자 및 후방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유도자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
- ▶ 유도자는 운전자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하며 장애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받아서 안됨
- ▶ 운전자와 유도자 사이에는 미리 약속된 신호를 정해 놓고 활용

3

통로의 관리

- ▶ 통로 및 운반로의 적당한 폭 유지·관리
- ▶ 설비와 통로 계획·설치 시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 ▶ 충분한 조명 설치·관리(필요한 조도 확보)
- ▶ 명확한 표지 설치(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통행 방법 안내)
- ▶ 보행자 안전확보(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보행 시 안정감 확보)
- ▶ 통로상 안전확보 조치기준의 마련

출처: 안전공단, 안전보건 VR 교안 「충돌재해 예방」

5. 사고발생 후 절차

1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 34

2 수사 진행 절차 / 36



image: storyset.com

5. 사고발생 후 절차

1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Check Point !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안전 담당자가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긴급조치
및
현장보존

- 재해자 응급처치·병원후송 등 구호조치, 인적사항 파악, 유가족 통보
- 사고발생 관련 설비의 가동중단 등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실시
- 언론 등 외부 인원이 무분별하게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

2

중대재해
발생사실
보고

- 사내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 중대재해인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감독관에게 유선 보고 후 팩스 전송(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작성)

3

회사 내
전담팀 구성
및 업무분담

- 회사 내 담당부서/담당자 긴급연락망 가동 및 회의 소집
- 가급적 담당자를 나누어 업무분담

4

중대재해
발생원인
파악

- 재해발생 경위 및 사고발생 원인 파악
- 안전·보건조치 미비사항 파악

5

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신속한 합의

- 유가족대표와의 협상 및 합의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소통채널 일원화)
- 장례식장, 입원 병원 등 신속한 방문 진행(재해자 가족 위로 표명)

6

언론, 국회,
노동단체
대응

- 언론기관 인터뷰 시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국회, 노동단체 등의 입장표명 요청 등에 대해 입장 정리 후 발표

5. 사고발생 후 절차

☑ <예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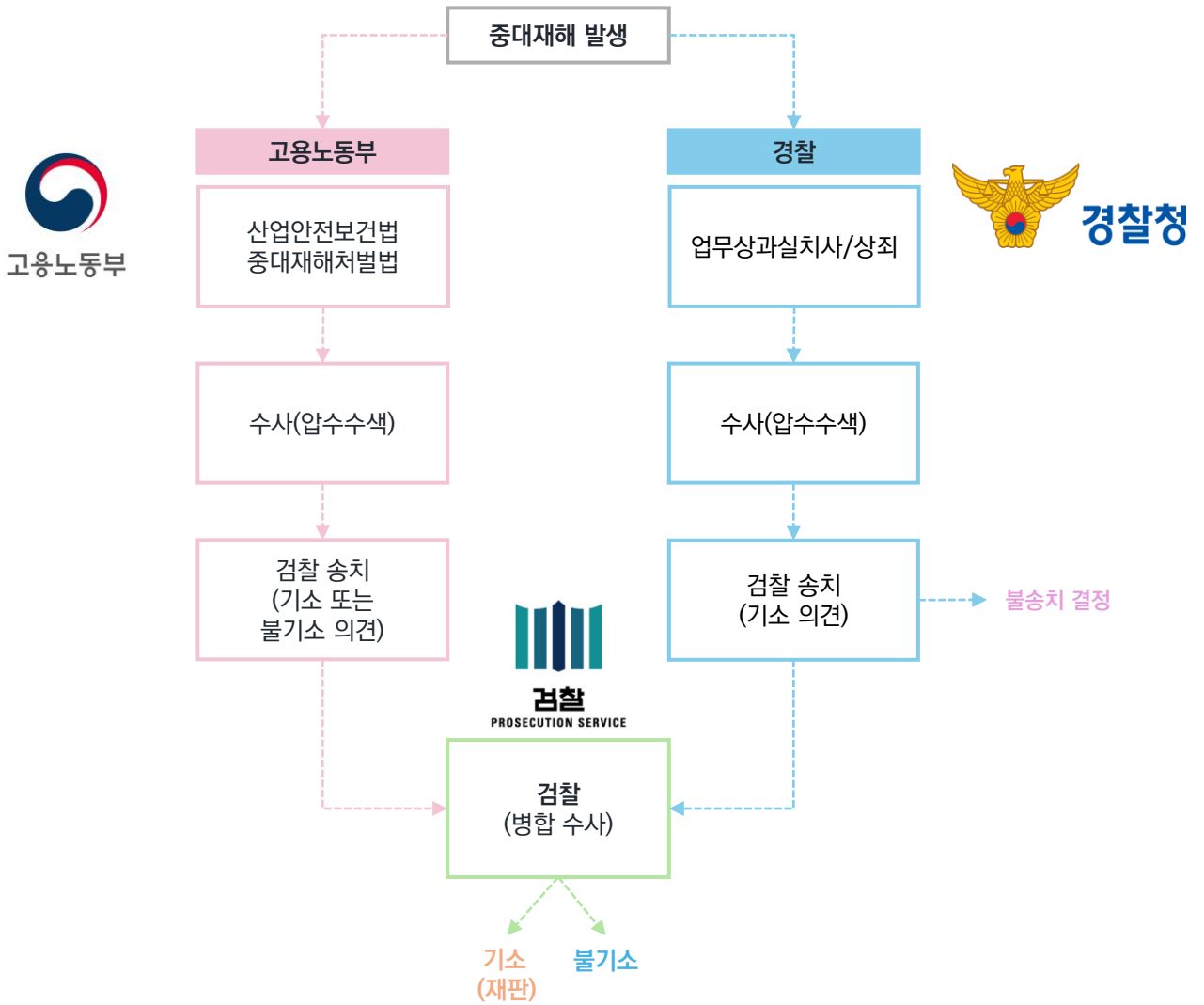
■ 산업재해(사망자 발생 or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 발생 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다만, 산업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단 산재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5. 사고발생 후 절차

2 수사 진행 절차

☑ <참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수사 절차



■ 수사 기관의 자료 요청 시 수정·가공 절대 금지!!

▶ 이메일·채팅 내역 등을 삭제하거나 안전보건 관련 문서를 수정하는 행위

※ 세부내용은 경총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를 참고하세요!